보 다 안 전 한 미 래
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(우)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(수서동,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) / Tel 02-567-1307/ Fax 02-567-1337

www.assi.or.kr E-Mail : assi1307@naver.com 담당 : 박용복국장 (H·P) 010-8688-5619

문서번호 시협 2019 - 114호

시행일자 2019. 04. 23.

수 신 교육부장관

참 조 교육시설과

선결				지시		
접수	일자 시간			결재·공람		
	번호					
처리과						
담당자						

제 목 교육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책임기술자 제한에 따른 조치 재요청

1. '사람중심 미래교육'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.

2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'시설물 안전법')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동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르면 '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'으로 건설기술자역량지수(ICEC)에 의하여 '건축구조기술사'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'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자'로 명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 부의 일부 교육청과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, 용역 입찰 조건에 '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'를 참가 자격으로 끼워 넣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

3. '건축구조기술사' 자격자 보유가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입찰조건에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수요·공급의 문제로 부실·불법 하도급을 양산하고 있으며(2018년10월25일 국정감사 시 국회 김현아의원 지적) 다수의 경험 있는 건축구조기술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.

4. 이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주무부서인 귀 부에 공문(시협 2019-13호, 2019.01.30.)을 보냈으나 회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입장을 재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(1) 2018년 10월 25일자 국정감사 관련기사 내용 1부. 끝.
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